

[문과대학]
2020년도 고려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

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
= 프로그램 수행 안내서 =

2020. 4.



고려대학교
KOREA UNIVERSITY

* 대학혁신지원사업 규정, 관리기준 등에 따라 지원 범위, 자격 요건 및 증빙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1.

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 사업 개요

1-1. 기본 개요

- (1) 사업명: 대학혁신지원사업 (I 유형 : 자율협약형)
- (2) 사업책임자(사업단장): 기획예산처 박희등 처장
- (3) 총사업기간: 2019년 3월 1일 ~ 2022년 2월 28일 (3년)
 - 2차년도: 2020년 3월 1일~2021년 2월 28일 (당해년도 사업기간)

(4)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

- 프로그램명: 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
- 세부 프로그램(4개)

세부 프로그램	주요 사업
인문 기반 학문 후속세대 양성	- Lab 프로그램 - 교과목 교육프로그램 - 비정규 교육 및 학술활동 프로그램, 학술답사, 대학원설명회 등
혁신적 인문교육 플랫폼	- 인문고전 학습 프로그램 -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
인문기반 융합교육 활성화	- 융합전공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- 융합전공 비정규 교육 및 학술활동 프로그램
글로벌 인문학 인재양성	-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전문가초청 강연

- 대상학과: 문과대학 소속 학과 및 문과대학 융합전공 (단 심리학과 제외)

- (5) 주관부처: 교육부 (관리전문기관: 한국연구재단)

1-2.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수행 절차

[진행절차]	[내용]	[비고]
• 사업 모집 공고 (공개모집 & 수시접수)	• [문과대학] 대학혁신지원 사업 - 미래세대 인문역 강화 프로그램	• 문과대학 전임 교원 대상 (심리학과 제외) • 인문역량강화기획집행위원 회 자체 기획
▼		
• 사업 신청	• 프로그램별 신청서 별지 서식 이용 • 담당 행정실 접수	• 신청자(교수/조직자) : 문과대학 전임 교원, 전담 연구교수 등
▼		
• 사업 신청서 심의·선정	• 인문역량강화기획집행위 원회	
▼		
• 심의 결과 공지	• 학과 및 전공별 공지	
▼		
• 사업 수행	• 신청자 사업 수행	
▼		
•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	• 신청자가 담당 행정실에 제출	• 비용 발생에 따른 결과보고 서 (수시) • 사업 수행 완료 후 최종 결 과보고서 (단위별)

※ 비용 발생에 따른 결과보고서(수시)

-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관련 증빙과 함께 결과보고서 제출
- **제출마감일: 비용 발생일자 다음달 3일 전까지 수시**
: 예시) 비용 발생일자 - 4월 1일 / 결과보고서 제출마감일 - 5월 3일
비용 발생일자 - 4월 30일 / 결과보고서 제출마감일 - 5월 3일
비용 발생일자 - 5월 1일 / 결과보고서 제출마감일 - 6월 3일

[2020학년도 사업 수행 기간]

- 비용 발생에 따른 결과보고서(수시)
-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관련 증빙과 함께 결과보고서 제출
- **사업수행기간: 선정일 ~ 2020년 8월 31일 또는 2021년 1월 31일(프로그램별 상이)**

[최종결과보고서 제출 필수] - Lab 프로그램

- 사업 수행 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(단위별)
- 최종 결과보고서 대상 프로그램: **Lab 프로그램**
- 제출서류: 최종 결과보고서 (계획 대비 단위별 진행사항 결과보고)
- 제출마감일: 사업 모집 시 명시된 '모집 사업기간' 이후 한달 이내
- **결과보고서 제출 최종 마감일: 2020년 9월 15일**

2.

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

※ 공통 사항 및 지원항목 증빙에 따른 양식 등은 『3. 프로그램 수행 및 유의사항』 참조

2-1.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

□ 학부 정규 수업 중 교과목에 해당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내지 강연 프로그램 운영 지원

- 전문가활용은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무관한 전문가 초청 불가능

※ 어학 교과목의 전문가 활용 지원 불가능

□ 주요 지원 항목: 전문가활용비, 회의비

- 수강자들의 교재 및 전문가 저서의 일괄 구입 지원 불가

- 전문가 활용에 따른 회의비에 한해 지원되며, 회의비 중 식대는 전문가 및 초청 주최 측 인원으로 한정 (최대 10명 이내)

※ 회의비는 3만원/1인 (식대 & 다과 포함) / 최대 선정 예산의 1/3 이내

- 사전 및 사후 회의비 지원 불가

- 발생한 비용은 행사 당일까지의 결제만 인정

< 주요 관련 서식 >

보고서 서식 2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

서식 1. 전문가활용계획서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전문가활용

서식 2. 전문가활용보고서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전문가활용

서식 3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서식 4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- 영문

서식 6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영수증 첨부지(법인카드) 서식

2-2.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- 일반

-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
 - 학부생 대상 특강 또는 교육프로그램
 - 국내 전문가 또는 석학 초청 강연
 - 학과 단위의 전체 학술 답사, 대학원설명회
 - 학과 단위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
- 주요 지원 항목: 전문가활용비(강사료 등), 행사비, 자료구입비, 회의비, 자료복사·제본비 등
 - 강사료 지급 기준: 도구언어 등의 프로그램에 연속 지급 가능(회당 30만원 / 2시간 이상), 연속 특강이 아닌 1~2회의 특강 형태는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 책정
 - 자료구입비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자료에 한정
 - 수강자들의 교재 및 전문가 저서의 일괄 구입 지원 불가
 - 전문가 활용에 따른 회의비에 한해 지원되며, 회의비 중 식대는 전문가 및 초청 주최 측 인원으로 한정 (최대 10명 이내)
 - ※ 회의비는 3만원/1인 (식대 & 다과 포함) / 최대 선정 예산의 1/3 이내
 - 사전 및 사후 회의비 지원 불가
 - 발생한 비용은 행사 당일까지의 결제만 인정

< 주요 관련 서식 >

- 보고서 서식 4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비정규 교육프로그램
- 보고서 서식 6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비정규-학술답사
- 보고서 서식 7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비정규-대학원설명회
- 보고서 서식 8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비정규-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
- 서식 1. 전문가활용계획서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전문가활용
- 서식 2. 전문가활용보고서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전문가활용
- 서식 3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서식 4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- 영문
- 서식 5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회의록 서식
- 서식 6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영수증 첨부지(법인카드) 서식
- 서식 7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영수증 첨부지(계좌이체) 서식

2-3.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- 학술대회 및 강연

□ 인문학 발전을 위한 국제·국내 학술대회 및 강연회 지원

- 주제 선정 및 강연자, 토론자 구성 시 학부생을 대상 또는 중심에 둔 자체 기획한 학술대회 및 강연회에 한하여 지원

※ 기성 학회의 정례 학술대회 지원은 불가

- 문과대학 여러 학과와 연구소가 연합하여 새로운 학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체 기획 학술대회 지원을 지향

□ 주요 지원 항목: 전문가활용비, 행사비(숙박, 다과&식대, 장소대여, 회의비 등) 등

- 자료구입비는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자료에 한정
- 청강자들의 교재 및 전문가 저서의 일괄 구입 지원 불가
- 전문가 활용에 따른 회의비에 한해 지원되며, 회의비 중 식대는 전문가 및 초청 주최 측 인원으로 한정 (최대 10명 이내)

※ 회의비는 3만원/1인 (식대 & 다과 포함) / 최대 선정 예산의 1/3 이내

- 사전 및 사후 회의비 지원 불가
- 발생한 비용은 행사 당일까지의 결제만 인정

< 주요 관련 서식 >

보고서 서식 5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비정규-학술대회 및 강연회

서식 1. 전문가활용계획서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전문가활용

서식 2. 전문가활용보고서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전문가활용

서식 3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서식 4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- 영문

서식 5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회의록 서식

서식 6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영수증 첨부지(법인카드) 서식

서식 7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영수증 첨부지(계좌이체) 서식

2-4. Lab 프로그램

- ☐ 대상학과 전임교원 단독 또는 전공별 Lab 운영 지원
- ☐ 학부생 최소 1인 참여 필수
- ☐ 주요 지원 항목: 자료구입비, 회의비, 자료복사비 등
 - 150만원 내외로 참여인원에 따라 조정
 - 회의비: 식대 & 다과비를 의미하며 전체 신청액의 1/3 이내 최대 50만원, 회당 최대 2만원/1인 기준
 - 도서구입은 지원 시작 후 2개월 이내 구입까지만 지원함
 - 지원불가항목: 전문가활용비, 자격증 시험 응시비 및 관련비용 등 지원 안 됨
- ☐ Lab 특성상 1회성 활동이 아닌 단위 기간 내 정기적인 활동을 지원

< 주요 관련 서식 >

- 보고서 서식 3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Lab 프로그램
- 서식 6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영수증 첨부지(법인카드) 서식
- 서식 9. [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] 도서목록 서식

3.

프로그램 수행 및 유의사항

3-1.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

□ 비용 발생에 따른 결과보고서 (수시)

-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 발생 시 관련 증빙과 함께 결과보고서 제출
- **제출 마감일: 비용 발생일자 다음달 3일 전까지**
 - ※ 예시) 비용 발생일자 4월 1일 ⇒ 결과보고서 제출마감일 5월 3일
 - 비용 발생일자 4월 30일 ⇒ 결과보고서 제출마감일 5월 3일
 - 비용 발생일자 5월 1일 ⇒ 결과보고서 제출마감일 6월 3일
- 결과보고서 증빙은 "3.3 사업 수행 증빙"을 참조하여 제출

□ 사업 수행 완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(단위별)

- 최종 결과보고서 대상 프로그램: Lab 프로그램
- 제출서류: 최종 결과보고서 (계획 대비 단위별 진행사항 결과보고)
- 제출마감일: 사업 모집 시 명시된 '모집 사업기간' 이후 한달 이내

□ 보고서 공통사항

- 프로그램명: 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
- 당해년도 연구기간: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당해년도 사업 기간 명시
 - ※ 2차년: '20.3.1~'21.2.28 (당해연도 사업기간)
- 사업책임자: 박희등 (또는 생략)
- 세부 프로그램명: 선정시 명시된 세부프로그램
- 계정과목: 연구관리비 (해외장단기연수, 인턴십 등 일부 프로그램 제외)
- 신청자: 대상학과 교원 또는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담 연구교수
- 양식의 파란색 글씨는 예시로 보고서 내용 작성 후 삭제

3-2. 대학혁신지원사업 로고

□ 대학혁신지원사업: 일반재정지원사업

-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(한국연구재단 관리)가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사업

□ 사업 지원에 대한 사사 및 수혜 명시 필요

- 브로셔, 포스터,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및 자료집 등에 명시

※ **문구 표시** 또는 로고 활용

- 교재개발 지원, 논문 사사 표기 의무: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 받을 경우

※ 교육부 학술지원사업의 사례에 준하여 표기 (핵심어: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,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)

□ 홍보물 및 자료집 등 표기 예시

- 단독 후원일 경우 예시

※ 주관: 고려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

※ 주최: XX학과

※ 후원: 한국연구재단

- 공동 후원일 경우 예시

※ 주관: 고려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/ BK21XXX사업단

※ 주최: XX학과

※ 후원: 한국연구재단 / XXXXXXXX

3-3.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

-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 재정지원사업으로서 교육부,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및 사업 수행 중 변경될 수 있음
- 사업비 집행은 사전 승인된 예산 범위 및 세부항목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원
 - 모집 공고시 명시된 지원기준 및 한국연구재단, 대학혁신지원사업단 내규 등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
- 본교 법인카드 및 계좌이체에 의해서만 사업비 집행
 - 법인카드: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법인카드, 문과대학 학과법인카드 외 학교 법인카드 등 사용
 - ※ 영수증 첨부란에 법인카드 소지자명 명시
 - 예시: 대학혁신지원사업 / xxxx 학과 등 (교수명의 법인카드 사용 지양)
 - ※ 교수 법인카드 사용시 전체 카드 번호 필요 (최초 보고서 제출시만)
 - 카드번호 보호를 위하여 영수증 첨부란에 명시하지 말 것 (메모지 활용)
 - 계좌이체: 세금계산서, 전문가활용비, 여비, 행사보조비, 본교 행사장 대관료 등을 제외한 계좌이체는 불가능
 - ※ 모든 계좌이체는 보고서에 의하여 본교 재무부를 통하여 집행 진행
 - 개인이 직접 실행한 계좌이체 및 법인카드 이체는 지원 안 됨 (현금사용)
- 사업비 집행 일시
 - 사업비 결제는 사업 수행 당일 결제되어야 하며, 오후 9시 이전 사용
 - 주말 및 휴일 사용: 명시된 사업 수행 일정에 따른 주말 및 휴일 사용은 가능하나 사업 수행과 무관한 사용은 지원 불가
- 사업비 집행 장소
 - 식대의 경우 일반대중음식점에서만 가능
 - ※ 유흥주점, 노래방 등 유흥업소, 레저업종, 사행업종에서 사용 금지.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한 장소지만 주류 및 술집으로 영업행위 하는 곳도 불가

- 회의비를 관할지역 외에서 사용할 경우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집행 가능
 ※ 관할지역은 업종 등록에 따라 유동적이나 안암동을 중심으로 한 성북구 인근

□ 용역 및 계약

- 200만원 이상 구입 필요시 본교 중앙구매 통해서 구매 진행 원칙
- 한 프로그램에서 한 업체와 2,000만원 이상 자금집행이 이뤄질 경우 공개 입찰을 통한 용역계약 체결 필요
 ※ 예시: 해외단기연수 시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, 현지 교통 및 숙소를 예약한 경우
- 입찰 진행 및 계약 진행으로 일정 기간 소요되므로 프로그램 진행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 필요
 ※ 예시: 공개 입찰 7일 공지 의무, 유찰될 경우 기간 연장
- 2,000만원 이내의 경우도 여행사를 통하여 상당금액을 한 업체에 집행할 경우 비교견적서 필요
 ※ 예시: 해외단기연수 시 항공권 구매

□ 기타 지원 불가 항목 예시

-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
 ※ 예시 1: 사업과 무관한 개인 일정 여비 사용
 ※ 예시 2: 신청 프로그램과 무관하게 연구소, 연구실 등의 운영비로 사용한 경우
-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
-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
- 실비에 의한 비용 처리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빙을 구비한 경우
- 여비 중복 수혜 및 전문가활용비 중복 수혜
 ※ 예시 1: 식사를 출장/연수 기관에서 제공받았는데 식비를 신청한 경우
 ※ 예시 2: 전문가활용시 체재비(일비/식비/숙박비)를 지원하였는데, 타기관 또는 자체 행사에서 중복하여 지원한 경우
- 사업비 집행시 개인 포인트, 마일리지 적립 안 됨
 ※ 예시: CJ포인트, 해피포인트, OK 캐쉬백 등

3-4.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

▣ "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"은 사전 승인된 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사업비 자금 집행을 위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증빙

▣ 전문가활용 증빙

- 지원항목: 자문료 / 강사료 / 체재비 / 번역료 & 통역료 / 교통비 등
- ※ 해외초청강사 교통비/체재비 지원시 필요서류
 - 기 본 - 여권사본, 출입국도장, 전문가활용계획서, 전문가활용보고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영문)
 - 교통비 - 항공탑승권, 항공료영수증(Original receipt), 은행계좌상세정보 (해외송금 증빙 참조)
- ※ 해외초청강사의 경우 소득 가능한 비자가 없으면 자문료, 강사료, 번역료 & 통역료 등 지급 불가능. **체재비 지원 및 교통비 지원 가능**
- ※ 국내 교통비: 승차권 (지역간 이동한 기차 또는 버스), 서울지역 소속 기관의 교통비 지원은 불가
- 증빙: 전문가활용계획서(활용 전 날짜), 전문가활용보고서(활용 후 날짜), 전문가 약력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, 관련 활동 자료(사진, 참석자명단, 발표자료 등)

▣ 보조인력 증빙

- 사업신청서의 세부예산항목에 명시되어 사전 승인된 행사보조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제출서류: 영수증 첨부지(계좌이체), 보조인력 근무일지(성명, 학과, 학번, 계좌번호, 일자, 주요 업무, 행사보조비 산출근거 등 [서식 8])

구분	집행기준		비고
단순 사무 보조	학부생 및 대학원생 지급기준 동일함	8,400원/시간	- 증빙자료 : 업무일지, 내용이 포함된 [근무일지] - 휴일/공휴일 및 야간 근무 : 시급의 1.5배
실내.외 행사 및 강의 보조		9,000원/시간	
학습튜터링, 멘토링, 코칭 등	학사 과정생	9,000원/시간	
	학사학위 소지 이상	10,000원/시간	
	석사학위 소지 이상	15,000원/시간	

▣ 교통비 증빙 (해외 항공권 포함)

- 참여교수 및 학생의 국내교통비 지원은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지원
- 초청 연사의 국내교통비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 본교까지 지원 가능
- 해외 전문가의 항공료를 직접 지원할 경우 전문가활용 증빙 참조
- 증빙: 승차권 또는 항공탑승권, 출입국사실증명서

※ 승차권 (기차 & 버스)

- 승차권에 카드결제 정보 및 금액이 명시된 것은 타 증빙은 불필요
- 카드결제 및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관련 영수증

※ 항공권: 항공 탑승권

※ 출입국관리기록

- 외국인: 여권 사진면 & 출입국도장 찍힌 면 사본
- 참여교수 & 학생: 출입국사실증명서

* 출입국사실증명서: 민원24 사이트(<http://www.minwon.go.kr>)에서 발급

▣ 해외송금 증빙

- 해외초청 전문가 또는 사업 수행에 따라 해외업체에 송금시 필요한 서류
- 증빙: 인보이스, 거래내역서(필요시), 은행계좌상세정보(개인/기관정보, 은행정보)

※ 인보이스, 거래내역서: 해외 업체에 송금시 필요

※ 개인/기관정보: 이름(계좌명)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

※ 은행정보: 은행명, 계좌번호, 은행주소, 은행코드(SWIFT BIC, ABA, IBAN 등)

- 은행계좌상세정보는 가능한 은행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기가 좋음

▣ 도서구입 증빙

- 구입된 도서의 소유권은 본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있으나 개인 보관 가능. 단, 도서구입목록 엑셀 파일을 행정실에 송부
- 인문고전 학습 프로그램(Veritas Forum): 선정 후 원서 구입 원칙
 - ※ 단, 판매가 안 되며 고전 등은 제본 가능
- Lab 프로그램: 선정 후 2개월 이내 도서 구입 권장
 - ※ 학기종료('20년 8월 31일) 직전 대량 구입 등은 지원 안됨
- 기타 프로그램: 사업시행일 또는 행사 기준일 이전 구입
 - ※ 행사 후 주문 및 사업기간 종료 직전 구매는 지양
- 공인인증서 또는 ISP인증 등이 필요한 국내 온라인 도서 구매는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담 행정실 방문 및 진행
 - ※ 도서 목록을 온라인 도서구매 사이트의 장바구니에 담아 행정실 방문 (10:00-16:30)
- 해외도서구매: 기본 도서구매 원칙 적용
 - ※ 해외 도서 구매 특성상 수령이 '20.07.31 이전 완료 지향
 - 해외사이트의 경우 배달 완료 후 결제가 진행되는 경우 많음(아마존). 보통 주문 후 2~3개월 후 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을 유의 (사업기간 초과시 지원 불가능)
- 증빙: 도서구매영수증, 도서구매관리목록(프린트 & 이메일, 수령자 명단)

▣ 자료 복사/제본 증빙

- 도서의 구입은 원서 구입을 원칙으로 함
- 복사/제본 지원은 발생시 사용된 비용에 한하여 지급
 - ※ 지원불가: 사전 결제 후 차감형태의 사용은 지원 불가
- 증빙: 영수증, 거래명세서(수량, 부수, 단가 명시), 복사/제본 사본
 - ※ 제본의 경우는 표지 및 목차 사본 제출 / 분량이 많은 복사의 경우 이메일로 증빙 전송 가능

▣ 회의비 증빙 (식대 및 다과)

- 회의비는 식대 및 다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서의 지출항목 작성 시 회의비로 작성
- 사업 모집 공고시 명시된 회의비 기준에 따라 회의비 집행
 - ※ 회의비 기준 예시: Lab - 2만원/1인
- 회의비 중 식대 사용시 일반대중음식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, 주류 등 유흥성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
- 회의비 중 다과는 관련 회의 또는 모임, 학회 등의 사전 준비물로서 사전 집행되어야 함
 - ※ 지원 불가 예시: 모임 종료 후 식사를 하고 커피는 지원 불가능 / 주류 및 유흥성 경비 지원 불가
- 증빙: 영수증, 참석자 사인, 회의록
 - ※ 영수증: 다과 구입시 구입목록 필요
 - 영수증에 목록 표시시 불필요. 단, **마트 등에서 일괄 구입한 경우 거래명세서 필요
 - ※ 참석자 사인: 식대 및 다과의 경우 참석자 사인 필요
 - Veritas Forum: 출석부로 같음
 - 학술대회 및 강연: 참석자 명단으로 같음
 - ※ 회의록: 사업신청에 의한 회의비 지원의 경우 보고서로 같음이 되나, 사전준비회의, 결과보고회의 및 기타 제회의는 회의록 필요
 - 보고서 같음: Lab, Veritas Forum

■ 홍보비 증빙

- 홍보물 제작시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명기
- 증빙: 영수증, 거래명세서, 홍보물 증빙

※ 홍보물 증빙

- 브로셔/포스터/현수막 제작 등: 홍보물 이미지 파일 프린트
 - * *홍보물이 부착된 곳을 찍은 사진 이미지가 아닌 홍보물 자체 이미지*
- 고대 홍보물 구입: 구입 물품 사진

■ 장소대여료 증빙

- 증빙: 영수증, 대관 내용

※ 본교 강의실 등 대여시 대관신청서(사용승인서)로 영수증 같음. 단, 대관 기준 및 사용일자, 대관 총 금액 명시

■ 세금계산서(또는 계산서) 증빙

- 세금계산서(또는 계산서)는 전자로 발행 원칙
- 세금계산서(또는 계산서) 발행 전 본교 사업자등록증을 발행 업체에 송부
- 세금계산서(또는 계산서) 발행

※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행정직원 앞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전자계산서) 발행

※ 비고란에 관련 해당 프로그램명 명시

※ 거래명세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필요

- 발행 업체에 발행 후 확인 사항

※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 행정직원에게 업체명, 발행금액 공지해 줌

- 증빙: 거래명세서, 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, 기타 관련 증빙

※ 기타 관련 증빙 예시: 홍보물일 경우 홍보물 증빙 (홍보비 증빙 참조)

■ 거래명세서

- 거래명세서는 여러 영수증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본교 및 한국연구재단의 요구 증대
 - ※ 거래명세서 필요 항목: 도서목록, 자료 복사/제본, 홍보물, 다과(일괄구입 시) 및 문구 등 기타
- 거래명세서는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(또는 계산서) 등에 빠짐없이 명기되어 있으면 별도로 불필요

■ 법인카드 영수증

- 발생한 영수증은 영수증 첨부지(법인카드)에 부착하여 보고서 및 증빙과 함께 제출
 - ※ 영수증은 전체 내용이 손실되지 않고 보이게 부착 (가능한 위·아래 살짝 부착 또는 테이프 활용)

■ 계좌이체

- 발생한 계좌이체건은 영수증 첨부지(계좌이체)에 첨부하여 보고서 및 증빙과 함께 제출
 - ※ 계좌이체건 예시: 행사보조인력, 본교 대관료
 - 전문가활용은 영수증 첨부지(계좌이체) 불필요